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22
----------	------

제출년월일 : 2021년 2월 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현재 서울특별시내 29개 공영차고지에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한 입주자(운송사업자)의 대부분이 준공영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 매 3년마다 서울특별시(서울시설공단)와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함.
- 나. 공영차고지 사업 특성상 일반공개경쟁이 불가하고(일반공개경쟁 시 기존 노선체계 파괴로 큰 혼란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기존 입주자와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현행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다. 이에 준공영제 시행 이후 현실을 반영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을 추가함(안 제4조 및 제5조).
- (현행) 시내버스 등 7개 운송사업자,
충전시설사업자(천연가스공급시설), 교통안전공단
 - (개정) 충전시설사업자(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추가
- 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용허가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기존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서울특별시의 버스노선체계 이행, 버

스운영 지원 등을 위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의 갱신이 불가피한 경우(서울특별시와 협의·허가된 양도·양수 등 포함)

-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버스 운영 등을 위해 공영차고지 입주가 필요한 경우다. 권역별 행정구역 중 동 명칭을 현행화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 11. 5.~11. 25.)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매입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을 “설치·매입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보”를 “서울시보”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자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8. 천연가스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충전시설사업자”라 한다)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4조제3항 본문 중 “공영차고지 권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를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공영차고지 권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이 조례에서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공영차고지에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충전시설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효율적인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서울특별시의 버스노선체계 이

행, 버스운영 지원 등을 위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의 갱신이 불가피한 경우(단, 양도·양수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어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는 사전에 시장의 협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2.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버스 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영차고지의 입주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를 “운송사업자, 충전시설사업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입주업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충전시설 설치 업체의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천연가스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권역별 행정구역

1. 도 심 : 중구 전역, 종로구(부암동, 평창동 제외)
2. 1권역(강동) : 강동구 전역, 송파구(풍납1·2동), 성동구(마장동, 왕십리
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2동, 사근동, 용답동, 성수1가2동,
성수2가3동, 송정동), 광진구(중곡1·2·3·4동, 능동, 군자동,
구의1·2동, 화양동, 광장동)
3. 2권역(송파) : 송파구 전역(풍납1·2동 제외), 성동구(응봉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성수1가1동, 성수2가1동, 옥수동),
광진구(자양1·2·3·4동)
4. 3권역(서초) : 서초구·강남구 전역, 용산구(용산2가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태원1·2동, 보광동)
5. 4권역(관악) : 동작구·관악구 전역, 용산구(청파동, 용문동, 후암동, 효창동,
한강로동, 남영동, 원효로1·2동, 이촌1·2동)
6. 5권역(구로) :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전역
7. 6권역(양천) : 강서구·양천구 전역
8. 7권역(은평) :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전역
9. 8권역(도봉) : 도봉구·강북구 전역, 성북구(성북동, 동소문동, 돈암2동,
동선동, 정릉1·2·3·4동, 길음1·2동), 종로구(부암동,
평창동) 일부 지역
10. 9권역(노원) : 노원구 전역, 성북구(삼선동, 돈암1동, 보문동, 장위1·2·3동,
안암동, 석관1·2동, 종암1·2동, 월곡1·2동)
11. 10권역(중랑) : 동대문구·중랑구 전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u>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매입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u>를 말한다.</p> <p>2. 3. (생략)</p> <p>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설치·매입하는 공영차고지의 명칭·위치 및 관할 행정구역은 시장이 <u>서울특별시보</u>에 고시한다.</p>	<p>제2조(정의) ----- ----- -----.</p> <p>1. ----- ----- ----- ----- ----- ----- ----- ----- ----- ----- <u>설치·매입하는</u> ----- ----- ----- -----.</p> <p>2. 3. (현행과 같음)</p> <p>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서울시보</u> ----- -----.</p>

현행	개정안
<p>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u>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사업자,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u></p>	<p>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현행	개정안
<p><u>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내압용기 검사시설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u>공영차고지 권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u>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공영차고지로부터 6킬로미터 이내에 노선의 기점·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와 공영차고지 해당 권역을 지나는 노선을</p>	<p>6.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자</p> <p>7.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u>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u>를 받은 자</p> <p>8. <u>천연가스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충전시설사업자”라 한다)</u></p> <p>9. 「<u>자동차관리법</u>」 제35조의8에 따라 <u>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공영차고지 권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이 조례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공영차고지에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충전시설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u></p>

현행	개정안
<p>운행하는 운송사업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계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신설></p>	<p>다.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u>제4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효율적인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u></p> <p>1. <u>기존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서울특별시의 버스노선체계 이행, 버스운영 지원 등을 위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의 갱신이 불가피한 경우(단, 양도·양수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어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는 사전에 시장의 협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u></p> <p>2. <u>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버스 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u></p>

현행	개정안
<p>제5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u>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u>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p> <p>1. (생략)</p> <p>2. <u>충전시설 설치 업체의 천연가스 공급시설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u>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p> <p>② ~ ④ (생략)</p> <p>【별표】 권역별 행정구역</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별표1] 권역별 행정구역</p> <p>1. 도 심 : 중구 전역, 종로구(부암동, 평창동 제외)</p> <p>2. 1권역(강동) : 강동구 전역, 송파구(풍납1·2동), 성동구(마장동, <u>왕십리1·2동</u>, 행당</p> </div>	<p><u>공영차고지의 입주가 필요한 경우</u></p> <p>제5조(사용료) ① ----- ----- <u>운송사업자, 충전시설사업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입주업체”라 한다)</u>-----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천연가스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u> ----- ----- <u>한국교통안전공단</u>-----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별표】 권역별 행정구역</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별표] 권역별 행정구역</p> <p>1. 도 심 : 중구 전역, 종로구(부암동, 평창동 제외)</p> <p>2. 1권역(강동) : 강동구 전역, 송파구(풍납1·2동), 성동구(마장동, <u>왕십리도선동, 왕</u></p> </div>

현행	개정안
<p>1·2동, 사근동, 도선동, 용답동, 성수1가2동, 성수2가3동, 송정동), 광진구(중곡1·2·3·4동, 능동, 군자동, 구의1·2동, 화양동, 광장동)</p> <p>3. 2권역(송파) : 송파구 전역(풍납1·2동 제외), 성동구(응봉동, 금호1·2·3·4동, 성수1가1동, 성수2가1동, 옥수1·2동), 광진구(자양1·2·3동, 노유1·2동)</p> <p>4. 3권역(서초) : 서초구·강남구 전역, 용산구(용산2가동, 한남1동, 한남2동, 서빙고동, 이태원1·2동, 보광동)</p> <p>5. 4권역(관악) : 동작구·관악구 전역, 용산구(청파1·2동, 용문동, 후암동, 효창동, 한강로1·2·3동, 남영동, 원효로1·2동, 이촌1·2동)</p> <p>6. 5권역(구로) :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전역</p> <p>7. 6권역(양천) : 강서구·양천구 전역</p> <p>8. 7권역(은평) :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전역</p> <p>9. 8권역(도봉) : 도봉구·강북구 전역, 성북구(성북1·2동, 동소문동, 돈암2동, 동선2동, 정릉1·2·3·4동, 길음1·2·3동), 종로구(부암동, 평창동) 일부 지역</p> <p>10. 9권역(노원) : 노원구 전역, 성북구(삼선1·2동, 돈암1동, 보문동, 장위1·2·3동, 안암동, 상월곡동, 동선1동, 석관1·2동, 종암1·2동, 월곡1·2·3·4동)</p> <p>11. 10권역(중랑) : 동대문구·중랑구 전역</p>	<p>십리2동, 행당1·2동, 사근동, 용답동, 성수1가2동, 성수2가3동, 송정동), 광진구(중곡1·2·3·4동, 능동, 군자동, 구의1·2동, 화양동, 광장동)</p> <p>3. 2권역(송파) : 송파구 전역(풍납1·2동 제외), 성동구(응봉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성수1가1동, 성수2가1동, 옥수동), 광진구(자양1·2·3·4동)</p> <p>4. 3권역(서초) : 서초구·강남구 전역, 용산구(용산2가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태원1·2동, 보광동)</p> <p>5. 4권역(관악) : 동작구·관악구 전역, 용산구(청파동, 용문동, 후암동, 효창동, 한강로동, 남영동, 원효로1·2동, 이촌1·2동)</p> <p>6. 5권역(구로) :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전역</p> <p>7. 6권역(양천) : 강서구·양천구 전역</p> <p>8. 7권역(은평) :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전역</p> <p>9. 8권역(도봉) : 도봉구·강북구 전역, 성북구(성북동, 동소문동, 돈암2동, 동선동, 정릉1·2·3·4동, 길음1·2동), 종로구(부암동, 평창동) 일부 지역</p> <p>10. 9권역(노원) : 노원구 전역, 성북구(삼선동, 돈암1동, 보문동, 장위1·2·3동, 안암동, 석관1·2동, 종암1·2동, 월곡1·2동)</p> <p>11. 10권역(중랑) : 동대문구·중랑구 전역</p>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개정 및 제4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신설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조양호 (02-2133-2372)